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0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삼표산업(이종석), ②디엘이앤씨(주)(마창민)

나. 전화번호 : ①02-476-5483, ②02-369-4181

2. 명칭 : 내한축진제 및 자극제를 사용하여 일 최저기온 -10°C 까지 급열 양생 없이 타설 가능한
한중 콘크리트 시공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콘크리트 제조 타설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일 최저기온 -10°C 까지 극한의 온도조건에서 1종 조강형 시멘트 및 방동재(에틸렌 글리콜 계열 복합체)와 조강제(소듐 티오시네이트)를 주원료로 하는 무염화 내한축진제와 자극제(규산칼슘 분산액)를 사용하여 별도의 급열 양생 없이 비닐 보양만으로 콘크리트의 초기동해를 방지하고, 타설 초기에 5MPa의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한중 콘크리트 시공 기술이다.

<범위>

일 최저기온 -10°C 까지 한중콘크리트 시공에서 설계기준압축강도 24MPa 이상의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비닐 보양방법 외의 별도의 급열 양생을 실시하지 않고 금속재 및 목재 거푸집을 사용한 부재의 두께에 따라 개발된 내한축진제를 적정량 사용하여 타설 후 초기에 압축강도 5MPa 이상을 발현하는 내한 콘크리트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